청약자금대출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하여 한양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한다)와 회사에 증권거래계좌(이하 "증권계좌"로 한다)를 개설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 과의 대출거래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대출"이라 함은 증권의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회사가 고객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대출약정"이라 함은 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이 약관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③ 이 약관에서 "대출거래"라 함은 대출약정을 맺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청약자금을 대출받는 거래를 말한다.
- ④ 이 약관에서 "대출금"이라 함은 대출약정을 맺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을 말한다.
- ⑤ 이 약관에서 "채무금"이라 함은 대출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등 채무 일체를 말하며, 그밖의 대출관련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 ⑥ 이 약관에서 "상환기일"이라 함은 고객이 채무금을 상환할 대출만기일로서, 대출신청시약정한 해당주식 청약금의 환불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 ⑦ 이 약관에서 "대용증권"이라 함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제공받는 증권으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출대상) 대출은 증권의 모집.매출에 따른 청약주식 중 실권주식의 청약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4조(대출약정) ① 고객은 회사에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다만, 홈트레이딩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이 직접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대출약정의 효력은 고객이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대출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거나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의해 대출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고객은 별도의 대출약정 체결 없이도 채무금의 상환 후에 계속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⑤ 고객은 대출금을 대출 즉시 청약주식의 증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별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대출약정 대상 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기 대출약정 체결자 및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이 대출약정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신규 및 추

- 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⑦ 인지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대출한도) 회사는 <별첨>에서 정하는 청약증거금의 일정비율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대출금액의 최고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제6조(대출기간 및 대출방법) ① 대출기간은 대출신청시 약정한 당해 청약주식의 청약일로 부터 환불일까지로 한다.

② 대출은 서면, 전화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실행시 대출금은 해당 증권계좌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담보의 설정)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청약증거금 및 청약으로 배정받은 증권과 교부받은 증권을 담보로 받는다.

제8조(대출의 상환) ① 고객은 상환기일에 채무금을 완제하여야 하며,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 ②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금이 있는 경우에 고객이 청약증거금의 환불금을 지급받을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상환 신청이 없더라도 이 환불금을 상환기일에 채무금 상환에 충당한다.
- ③ 고객이 채무금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상환 처리한다.

제9조(담보권의 실행 및 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채무금이 당해 청약주식의 상장일까지 완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증권을 상장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 처분하여 채무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채무금이 완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에 있는 고객 계좌의 현금,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채무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채무금의 상환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0조(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의 효력은 고객이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신주, 그 밖의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미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대출이자를 대출금 상환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 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의 상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 1. 당해 대출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4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대출 총한도 초과 등 회사가 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중단할 수 있고, 동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대출 신청일에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사홈페이지 등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시한다.

제15조(추가비용)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담보권 실행 등 채권보전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제18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2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3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 1. 제4조 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대출약정 대상 제한 고객은 다음과 같다.
- □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고객
- 2. 제5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청약증거금의 일정비율 및 1인당 대출금액 최고 한도는 다음과 같다.
- □ 2억원(100만원이상 1만원단위)
 - 단, 청약증거금의 50%이내
 - ※ 당사 대출한도 소진으로 인하여 대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 이자율 : 연 9%
 - □ 연체이자율 : 연 17%
 - ※ 이자 계산기간 :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 4. 제14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의 신용도는 다음과 같다.
- □ 채무불이행자
- 5. 제22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 연체이자는 개별합의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